

서울광장 사용권리 되찾기 주민조례개정 서명운동

“광장을 열자
조례를 바꾸자”

서울광장 사용은 서울시장 맘대로? 아니 시민의 뜻대로!

서울광장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은 1987년 6월 항쟁의 중심지였고, 작년에는 미국산광우병위험 쇠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로 가득 찼었습니다. 역사의 굽이굽이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곳이 바로 서울광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찰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사용을 문화행사로만 제한하고 그것도 입맛에 맞는 단체에게만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경찰버스로 차벽을 치고 집회시위는 물론 시민들의 통행까지 가로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의 이런 횡포를 더 이상 그냥둘 수 없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청구를 통해 서울광장조례를 직접 바꿉시다!



서울광장사용조례 이렇게 바꿉시다

서울광장, 노는 것만 가능하고
토론 & 의견표출은 불가능?

서울광장사용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은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서울광장이 시장의 광장이 아닌 '시민의 광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합니다.
조례개정은 <주민조례개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내용	현행조례	개정조례안
사용신청	허가제 (허가신청)	신고제 (신고수리접수)
사용목적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와 다양한 공익적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사용허용판단	시장 맘대로 할 수 있음	시민위원회 설치하여 시민의견 반영토록 함
사용허용변경	<부득이한 사유>로만 명시	<부득이한 사유>를 시민의 생명 등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구체화, 시민위원회의 의견 반영토록 함
사용자 차별금지	규정 없음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차별가능	연령·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사용에 대한 차별금지

민주주의에 날개를 다는 서울시민의 1%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한 사람이 10명씩만 서명을 받아주세요

2009년 12월까지 서울 시민의 1%, 약 10만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주민조례개정청구, 자필서명을 받는 다소 복잡한 절차이지만
시민의 작은 힘으로 서울광장 조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조례개정청구의 수임인이 되어주셔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주민조례개폐청구란?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주민이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지방자치법 15조)

주민조례개폐청구 절차

1. 청구인 대표자 선정하여 조례개폐청구서와 조례개정안을 서울시에 접수 / 서울시의 대표자 확인과 공표
2. 수임인(서명을 받으려 다니는 사람)의 수임
3. 서울시민에게 서명받기(주민번호, 주소, 서명혹은날인, 서명날짜가 포함된 양식에 서명)
4. 6개월간 서명을 받아 하여 80,958명을 넘을 경우 청구인명부 서울시 제출
5.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 청구요건심사 / 지방의회 부의 및 의결

서울광장 조례개정 자세한 내용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문의 참여연대 전화 02-723-5302 팩스 02-6919-2004

서명용지 보내실 곳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